

※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(단,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)
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

■ 일반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 (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되어야 함)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확인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			
공통서류 (가점제/추첨제)	○		신분증	본인	·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무주택서약서(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)	본인	· 견본주택 비치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·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, '전체포함'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·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, '전체포함'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·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하여 '상세'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·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'상세' 로 발급 *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하여 '상세'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· 국외 거주기간 여부 확인 (*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)
		○	해외체류(단신부임) 관련 증빙서류	본인	· 당첨자 본인(혼자)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현재 체류 중이거나, 체류한 경우로서 해당 해외 체류 기간을 국내 체류 기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	○	복무확인서	본인	·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 기간(10년 이상) 명시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·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(상기 본인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'전체포함'으로 발급)
		○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· 재혼가정의 자녀(본인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)로서 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·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*본인 및 배우자,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하여 '상세'로 발급
	○	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	본인	·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(아파트 계약용/본인발급분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	
가점제 추가 서류		○	출입국사실증명서	피부양 직계존속·비속	·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피부양인 전원 제출(배우자 제외) *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
		○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비속	·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*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, 변동사유 및 발생일(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, '전체포함'으로 발급
		○	혼인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비속	· 만18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*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'상세'로 발급
		○	가족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존속	·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*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하여 '상세'로 발급
		○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·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*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*주소변동사항, 변동사유 및 발생일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, '전체포함'으로 발급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(소명자료)	○	사업주체가 필요시 추가로요구하는 서류	무주택소명 등	·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에 따른 해당서류 *소형·저가주택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확인원,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)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 조에서 정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타 증명 서류(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) · 당첨자 및 세대원의 소유 주택 현황 사료가 다양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증빙을 요구하는 서류	
			당첨사실 소명 등	·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

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,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, 세대주 여부,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.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포함)으로 간주합니다.

■ 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입증서류 (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)

서류유형	추가 (해당자)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				
○		해외근무 증빙서류	본인	·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·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· 근로자가 아닌 경우(반드시제출):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·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 관련 서류 증빙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
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	·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(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)
	○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본인 및 세대원	·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 *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당첨자(청약신청자)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, 연간 183일을 초과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